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골재채취법」 개정(법률 제18552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으로 품질관리전문기관을 통한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품질검사의 방법·절차,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수수료 납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적정 복구비용 예치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설차폐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를 위한 제출 서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업무의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업 양도·양수를 위한 제출 서류 개선(안 제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시 이와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으면 골재채취업 등록증 및 양도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나. 골재 품질검사제도 세부 운영기준 마련(규칙 제10조의2, 제14조의7, 제18조의2, 별표5)

「골재채취법」 개정(2021.12.7. 개정, 2022.6.8. 시행)으로 골재 품질검
사제도가 도입될 예정에 따라,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전문
기관 지정 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다.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마련(안 제16조, 별표3의2)

골재 선별·파쇄시설에 대한 적정 복구비 예치를 위해 산정기준을 마련

라. 복구비의 적정성 재확인 및 시설차폐계획 제출 근거 마련(안 제17조)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이행여부 확인 과정에서 복구비 예치의 적
정성을 재확인하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선별·파쇄시설의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시설차폐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

마.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 업무의 처리기간 합리화(별지 제18호의3)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업무처리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의2의 제목“(골재 품질조사 및 조사결과의 공표)”를“(골재 품질검사 및 검사결과의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 후단”을 “법 제22조의4제4항”으로, “품질조사”를 “품질검사”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및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조사를 하였”을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로, “조사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를 “점검결과를 7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7의 제목“(골재 품질시험 시기·절차 및 방법 등)”을“(골재 품질검사 방법·절차 및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으로 한다.

제14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대행

하여”를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전문기관이”로, “품질시험”을 “품질검사”로 한다.

① 법 제22조의4제7항에 따른 골재 품질검사 시 시료채취 방법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501(골재의 시료채취 방법)을 따라야 하며, 골재의 품질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은 골재채취업체에 대한 골재 품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려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1호·제3호·제4호”를 “제3항제1호·제3호·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골재선별·파쇄업에 대한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별표 3의2의 기

준에 따라 산정한다.

⑤골재선별·파쇄업에 대하여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며, 예치자는 보증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보증서를 갱신하는 등 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⑥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는 사업부지의 확대, 시설·장비의 증설,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복구비용 예치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제1항 후단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골재채취용 시설에 대한 차폐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의 필요성 및 제16조 제6항에 따른 추가 예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복구비용을 예치 또는 추가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제2항 전단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6조제2항제1호”를 “제16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협회는”을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은”으로,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협회의”를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 검사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전문기관은 수수료 금액을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9조제2호 중 “품질시험 시기·절차 및 방법”을 “품질검사의 방법·절차”로 한다.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용도	골재원	시험종목	시험방법		검사 주기
콘크리트용	하천 바다 육상	염화물 함유량	모래	KSF2515	<u>1회 이상/매년</u>
			자갈	-	<u>1회 이상/매일(자체시험)</u>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용	하천 바다 육상 산림 선별 파쇄	절대건조 밀도	모래	KSF2504	<u>1회 이상/1년</u>
		흡수율	모래	KSF2504	<u>1회 이상/1년</u>
		안정성	모래	KSF2507	<u>1회 이상/1년</u>

별표 3의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명기”를 각각 “명확히 기록”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3호 중 “레미콘 · 일반콘크리트 · 아스콘 · 도로기층 · 보도기층 · 철도 · 콘크리트파일 · 벽돌 · 미장”을 “레미콘 · 일반콘크리트 · 아스콘 · 도로기층 · 보조기층 · 철도 · 콘크리트파일 · 벽돌 · 미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3서식 중 “7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4조의7, 제18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과 별표 5는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 · 세척 또는 파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 · 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선별 · 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골재 선별 · 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3의2]

복구비 예치금 산정기준(제16조 관련)

1. 골재생산을 위하여 설치한 생산설비 등의 철거 비용
 - 가. 파쇄기, 이송장치 등 기계설비의 철거공사 비용
 - 나. 전기패널 등 자동제어설비의 철거공사 비용
2. 부대시설 철거 및 부지 원상복구 비용
 - 가. 바닥콘크리트포장 및 철근콘크리트 기초 등 구조물 철거공사 비용
 - 나. 현장 사무실 등 가설건축물의 철거공사 비용
 - 다.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 라. 모래생산에 따른 폐기물(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처리비용
 - 마. 생산현장 부지정지 및 원상복구 비용
 - 바. 기타 골재생산을 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복구비 예치금 산정방법
 - 가. 생산설비의 시간당 생산능력(ton/h)에 따른 철거비용 산정
 - 나. 생산현장의 부지면적(m²)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산정
 - 다. 모래 생산설비(샌드플랜트) 보유 현장에 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 산정
4. 복구비 예치금 산정기준

가. 모래 생산설비(샌드플랜트)가 없는 경우

$$\text{예치금(원)} = \text{부지면적(m}^2\text{)} \times 10,453\text{원} + \text{시간당 생산능력(ton/h)} \times 428,557\text{원}$$

나. 모래 생산설비(샌드플랜트)가 있는 경우

$$\text{예치금(원)} = \text{부지면적(m}^2\text{)} \times 16,867\text{원} + \text{시간당 생산능력(ton/h)} \times 428,557\text{원}$$

비고

1.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3년마다 단위부지면적당(m²) 원상복구비용 단가와 시간당 생산능력에 따른 철거비용 단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석재·골재폐수오니 처리비용을 별도로 예치한 경우는 모래 생산설비(샌드플랜트)가 있더라도 제4호 가목에 따라 복구비 예치금을 산정한다.

[별표 5]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1. 공통 자격

- 가. KS Q ISO/IEC 17025에 따라 시험업무 처리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나. 골재 품질관리 업무를 사업 목적으로 포함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시설·장비 기준

가. 시설 기준

- 총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골재에 관련된 전용 시험실 및 사무실 등으로 구분·구획되어 있어야 하며 시약 시험을 위한 자동환기시설 및 시약 보관 시설이 구획되어야 한다.
- 각각의 골재시험 종류에 따라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장비 기준: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분	시험 기구 및 장비	수량
밀도	모래(KS F 2504), 자갈(KS F 2503) 규격에 따른 시험으로 저울, 플라스크, 원뿔형 몰드, 다짐봉, 건조기, 철망대, 물탱크 등 시료준비 및 밀도 측정 가능 시험 기구	1식(set) 이상
흡수율	모래(KS F 2504), 자갈(KS F 2503) 규격에 따른 시험으로서 저울, 플라스크, 원뿔형 몰드, 다짐봉, 건조기 등 시료준비 및 흡수율 측정 가능 시험기구	1식(set) 이상
안정성	KS F 2507에 따라 표준망체, 철망바구니, 용액 침지 용기, 건조기 등 용액반응에 의한 골재 손실질량 측정 시험기구	1식(set) 이상
점토덩어리	KS F 2512에 따라 저울, 표준망체 등 점토덩어리 분리 및 질량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시험기구	1식(set) 이상
체 통과율	KS F 2512 따라 표준망체, 저울, 골재 침지 용기 등 0.08mm체를 통과하는 잔입자의 질량측정 시험 기구	1식(set) 이상
입자모양 판정실적률	KS F 2527의 6.18 시험 방법에 따른 골재의 단위용적질량(KS F 2505) 및 건조밀도 측정이 가능한 시험 기구	1식(set) 이상
마모율	KS F 2508에 따라 규격에서 정하는 로스앤 켈레스 시험장비 및 표준망체, 질량 측정이 가능한 시험장비	1식(set) 이상

	및 기구	
염화물 함유량	KS F 2512에 따라 초자기구(비커, 피펫, 데시게이터, 플라스크 등) 질산은 용액 및 크롬산 칼륨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용 초자 기구	1식(set) 이상
체가름 (조립물)	KS F 2502에서 규정하는 표준망체(KS A 5101) 및 질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시험기구	1식(set) 이상
편장석률	KS F 2575에 따라 표준망체, 편장석 골재를 판별하는 측정자, 질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시험기구	1식(set) 이상
파쇄면 비율	KS F 2357 부속서 1에 따라 표준체 및 파쇄면을 구분과 질량이 측정이 가능한 시험기구	1식(set)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에 따라 모래당량 시험장치 및 진동 교반기 시험기 또는 수동진동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시험장치	1식(set) 이상
잔골재공극률	KS F 2384에 따라 소형 실린더 및 깔때기, 스페큘라 등 질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시험기구	1식(set) 이상

3. 기술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술인력	해당 분야	
	전공 분야	자격 분야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목, 토목시공, 토목재료, 건축, 건축시공, 건축재료 지질, 자원 관련분야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 사, 건설재료시험기사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건축산 업기사 또는 건설재료 시험기능사
나. 기사 1명 이상		
다. 산업기사 1명 또는 기능사 1명이상		
라.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토목공학, 건축공학, 재료공학, 자원공학, 토양환경, 지질학, 이공계열 관련 학과	
마. 골재분야 KS인증 심사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건설(F) 분야 KS인증 심사원	

비고

1.시설·장비

가.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측정 장비는 중복 사용 가능.

나.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는 측정 소급성 및 교정관리 절차에 따라 필요시 교정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2.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은 해당 기관의 골재 품질 관련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다른 골재품질 관련기관 등의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술사는 해당 자격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콘크리트 및 골재 품질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한 후 콘크리트 및 골재 품질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골재 품질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바.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7조(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u>.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u>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u>골재 품질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u>) ① <u>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골재 품질조사 결과의 공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u> ②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골재 품질조사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u>	제10조의2(<u>골재 품질검사 및 검사 결과의 공표</u>) ① <u>법 제22조의4 제4항----- 품질검사</u> ----- --- <u>국토교통부 및 품질관리전문기관</u> ----- <삭 제>

재의 시료(試料)를 수거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가 참관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골재 품질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별표 3에 따라 실시한 시험종목별 측정값

제14조의7(골재 품질시험 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골재채취업자는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별표 3에 따라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② -----
----- 품질
-----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
----- 점검결
----- 과를 7일 이내에 -----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제14조의7(골재 품질검사 방법·절차 및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의4제7항에 따른 골재 품질검사 시 시료채취 방법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을 따라야 하며, 골재의 품질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은 골재채취업체에 대한 골재 품질검

<신 설>

<신 설>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대행하여 실시한 골재의 품질시험 결과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6조(복구비예치) ① (생략)

사를 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려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 법 제22조의4 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전문기관이 -----
----- 품질검사 -----

--.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복구비예치) ① (현행과

<신 설>

② (생 략)

③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골재채취기간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같음)

②골재선별·파쇄업에 대한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

1. ~ 4. (현행과 같음)

⑤골재선별·파쇄업에 대하여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며, 예치자는 보증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보증서를 갱신하는 등 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⑥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는 사업부지의 확대, 시설·장비의 증설,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복구비용 예치금액이 변경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제17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 (생 략)

② 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 제3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제1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증권 등을 납부받아 예치

5. 골재채취용 시설에 대한 차폐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의 필요성 및 제16조제6항에 따른 추가 예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복구비용을 예치 또는 추가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7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6조제3항 -----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8조의2(수수료) ①·② (생략)

<신설>

③ 협회는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

-----.
----- 제16조제3항제1호-----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8조의2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전문기관은 수수료 금액을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은 -----

----- 제2항 및 제3항-----

-----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

-----.

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4조의7에 따른 골재 <u>품질 시험 시기·절차 및 방법</u> 등 3. (생략)	----- ----- ----- -----.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 -----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품질</u> <u>검사의 방법·절차</u> ----- 3. (현행과 같음)
--	--